

제6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 (계약목적)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자 한다.

제21조 (계약기간) ①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수급자가 원하는 날짜(구입일)로 하나, 복지용구 대여의 경우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되,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후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1개월 이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다.

④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 종료된다.

제22조 (계약준수사항) ① 복지용구 급여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한다.

② 기관은 계약체결 시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비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 안내한다.

③ 기관은 고장 시 처리방법 및 A/S 등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④ 수급자는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① 복지용구급여 이용료는 아래와 같다.

1. 수급자는 연 한도액 160만원내에서 복지용구 급여 이용 가능 : 최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씩 160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2.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내에서 이용 가능 : 「복지용구급여확인서」‘복지용구 급여내용’ 항목에서 확인 가능

3. 복지용구급여의 본인부담금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참조) 상 본인부담율(15%, 9%, 6%, 0%)만 납부

② 복지용구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1. 일반이용자 : 복지용구급여비용(복지용구가격)의 15%
2. 기초생활수급권자 : 복지용구급여비용(복지용구가격)의 0%
3. 의료급여수급권자 : 복지용구급여비용(복지용구가격)의 6%
4. 경감대상자 : 복지용구급여비용(복지용구가격)의 6% 또는 9%

③ 본인부담금 납입방식은 아래와 같다.

1. 대여 급여의 경우 : 납입방식은 월납입 원칙, 본인부담율(0%~15%)에 따라 납입, 만약 선납입의 경우 본인부담요율이 변동함에 따라 환불금이 발생할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이 종료될 때 기타 환불금과 함께 환불. 단, 연속된 대여료의 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월 15일로 산정,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일에서 최대 7일까지 추가로 청구

2. 구매 급여의 경우 계약 후 본인부담율(0%~15%)에 따라 한 번만 납부

④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기관은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 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따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 불가
2. 수급자는 연 한도액을 초과하여 복지용구급여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 부담
3. 수급자별 이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복지용구급여확인서」‘복지용구 급여내용’란에서 확인 가능) 이외의 품목을 이용할 경우에도 수급자가 부담

제24조 (계약 체결) ① 복지용구급여 개시전 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 수급자(보호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급여계약서(복지용구공급계약서)는 계약당사자, 급여품목, 계약기간, 급여품목 종류, 비용, 기타 협약사항, 서명 등을 포함하여 2부를 작성,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한다. 계약 변경에도 또한 같다.

③ 급여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④ 기관은 수급자 본인 여부, 수급자격(인정유효기간), 연한도액, 타법령 중복급여 및 사용가능햇수제한, 구입제품갯수, 장기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여부, 사용가능(불필요)품목, 연장대여제품 사용 여부 및 연장 대여기간 등 복지용구급여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 ⑤ 기관은 연장 대여기간 동안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용구 계약을 원하는 수급자 등에게 연장 대여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본인부담금을 충분히 안내한다.
- ⑥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 장기요양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 ⑦ 수급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4.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제25조 (계약자 의무) 기관과 수급자(보호자) 간에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의무
 - 가. 복지용구대여급여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나. 급여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반드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다.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통보 의무
 - 라.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 사전 예방 조치
 - 마.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 금지
2. 기관의 의무
 - 가. 급여계약서에 따라 복지용구급여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
 - 나. 복지용구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 매뉴얼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며, 이용 시 불편함에 있어서는 즉시 방문 상담·조치
 - 다. 종사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수급자 사고 시 책임부담
 - 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 경주
3. 보호자의 의무
 - 가. 복지용구 대여품목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나.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다. 대여급여수급자 시설 또는 요양병원에 입소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 금지

제26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의 복지용구 계약 내역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 권리
2.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불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복지용구급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계약의 변경, 해제를 요청할 권리
5. 수급자의 인지기능의 문제가 있을 시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의 복지용구 대여급여 월 대여료 및 수급자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2. 수급자 복지용구 구입과 관련하여 기관의 자료 제공을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3. 대여급여 수급자가 이사, 입원, 시설 입소,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4. 수급자 등의 부주의로 발생한 복지용구 대여 품목의 오손, 파손, 분실 시 원상 회복 책임 의무

제27조 (신원 인수인의 변경) ① 기관은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 해당 시 신원 인수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원 인수인이 사망한 경우
2. 신원 인수인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3. 신원 인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기타 신원 의무인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수급자는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8조 (계약해지) ① 수급자(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복지용구급여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소비자기본법」‘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급여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6회 이상 복지용구 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경우
4. 수급자가 고의로 대여품목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6. 보호자가 수급자의 입원, 사망 등으로 급여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한 경우 즉시 해당일로 급여계약을 종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